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일반직 의사, 전임 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” 을 “에서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 이라 한다)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” 으로 한다.

제2조중 “일반직 의사, 전임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” 를 “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” 로 한다.

제2조제1호중 “일반직 의사” 를 “일반직공무원인 의사” 로 한다.

제2조제2호중 “전임전문직 의사” 를 “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” 로 한다.

[별표 1]과 [별표 2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【별표1】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전 문 의	일 반 의
월 609,000원	월 518,000원

비고 :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르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로 한다.

【별표2】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근무연수별	등급별	가 급	나 급
	5년 이상	월 1,012,000원이하	월 673,000원이하
4년 이상	월 1,006,000원이하	월 667,000원이하	
3년 이상	월 1,000,000원이하	월 661,000원이하	
2년 이상	월 995,000원이하	월 656,000원이하	
2년 미만	월 989,000원이하	월 650,000원이하	

비고 :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.

내 용

제1차 (총점) 이 점수를 지방공무원의 수당상정(이하 '영'이라 한다)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수당상정영역에 관한 직 의사, 직급 조정의 의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상정영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차 (지방공무원의 수당) 영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항의 의사, 직급 조정의 의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상정영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1. 일반직 의사 : '별표1'의 지방공무원
- 2. 전문직(행정직)의 의사 : '별표2'의 지방공무원

[별표1]

지방공무원의 수당상정(이하 '영'이라 한다)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수당상정영역에 관한 직 의사, 직급 조정의 의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상정영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지 역 계 계	조 비 금	인 간 기
갑 지	354,000	471,000

비고 : (1) 지방공무원의 수당상정(이하 '영'이라 한다)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수당상정영역에 관한 직 의사, 직급 조정의 의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상정영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별표2]

지방공무원의 수당상정(이하 '영'이라 한다)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수당상정영역에 관한 직 의사, 직급 조정의 의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상정영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지방공무원 수당상정영역	영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	
	1 영	2 영
5년 이상	880,000이하	585,000이하
4년 이상	875,000 +	580,000 +
3년 이상	870,000 +	575,000 +
2년 이상	865,000 +	570,000 +
1년 이상	860,000 +	565,000 +

비고 : (1) 지방공무원 수당상정(이하 '영'이라 한다)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수당상정영역에 관한 직 의사, 직급 조정의 의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상정영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개 정

제1차 (총점) _____
 _____에서 지방공무원(이하 '영'이라 한다)의 수당상정영역에 관한 직 의사, 직급 조정의 의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상정영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차 (지방공무원의 수당) _____
 영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항의 의사, 직급 조정의 의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상정영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1.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 : [별표1]의 지방공무원
- 2. 전문직(행정직) 공무원의 의사 : [별표2]의 지방공무원

[별표1]

지방공무원의 수당상정(이하 '영'이라 한다)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수당상정영역에 관한 직 의사, 직급 조정의 의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상정영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지 역 계 계	조 비 금	인 간 기
갑 지	609,000원	518,000원

비고 : _____

[별표2]

지방공무원의 수당상정(이하 '영'이라 한다)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수당상정영역에 관한 직 의사, 직급 조정의 의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상정영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지방공무원 수당상정영역	영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	
	가 영	나 영
5년 이상	월 1,012,000원이하	월 673,000원이하
4년 이상	월 1,006,000 +	월 667,000 +
3년 이상	월 1,000,000 +	월 661,000 +
2년 이상	월 995,000 +	월 656,000 +
2년 미만	월 988,000 +	월 650,000 +

비고 : _____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.